

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

[시행 2013.3.23.] [외교부령 제1호, 2013.3.23., 타법개정]

1. 개정이유

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외교안보연구소내 연구부 1개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을 정하고, 그에 따른 타 연구부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아시아·태평양연구부에 분장되었던 중동 업무를 삭제
- 나. 기존 유럽·아프리카연구부를 유럽·러시아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
- 다. 기존 경제·통상연구부를 경제·통상·개발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
- 라. 아프리카·중동연구부를 신설하고 소관업무를 분장
- 마. 안보통일연구부 소관업무를 조정(지역안보 및 국제안보 추가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·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3. 6., 2013. 3. 23.>

제2조(명칭 및 구성)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보통일 연구부, 아시아·태평양연구부, 미주연구부, 유럽·**러시아**연구부, 경제·통상·**개발연구부** 및 **아프리카·중동연구부**를 둔다. <개정 1998. 3. 3., 2008. 3. 6., 2013. 3. 23.>

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제3조(소관업무) ① 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·연구
2. 남·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·연구
3.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관한 조사·연구
4. 기타 안보통일문제 관련사항
5. **지역안보·국제안보에 관한 조사·연구**

② 아시아·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1998. 3. 3.>

1. 동북아·동남아·서남아·~~중동~~ 및 대양주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과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·연구

2. 우리나라와 동북아 • 동남아 • 서남아 • ~~중동~~ • 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 • 태평양 경제협력체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• 연구

3. 기타 동북아 • 동남아 • 서남아 • ~~중동~~ • 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 • 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사항

③ 미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 • 연구

2. 우리나라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• 연구

3. 기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 관련사항

④ 유럽 • 러시아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1998. 3. 3., 2008. 3. 6.>

1. 유럽 • 러시아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 • 연구

2. 우리나라와 유럽 • 러시아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• 연구

3. 기타 유럽 • 러시아지역 국가 관련사항

⑤ 삭제 <2013. 3. 23.>

⑥ 경제 • 통상 • 개발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 • 통상 • 국제개발협력, 금융문제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문제에 관한 조사 • 연구

2. 다자간 국제통상 • 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, 국제개발협력 및 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 • 연구

3. 기타 국제경제 • 통상 • 개발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사항

⑦ 아프리카 • 중동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아프리카·중동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·연구
2. 우리나라와 아프리카·중동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·연구
3. 기타 아프리카·중동지역 국가 관련사항

제4조(연구부장등의 직무) ①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업무를 지휘·감독한다.

② 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,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8. 3. 6., 2013. 3. 23.>

제5조(연구부장의 임기)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같은 연구부장으로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3. 3. 23.]

제6조(시행세칙)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8. 3. 6., 2013. 3. 23.>

부 칙 <제1호, 2013. 3. 23.>(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"을 "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「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"을 "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"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"를 "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"을 "연구원"으로 한다.

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연구관·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조교는"을 "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연구원은"으로, "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"을 "외교부장관,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"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연구부장의 임기)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같은 연구부장으로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
⑥부터 ⑱까지 생략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구성) ① 국립외교 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 보통일연구부, 아시아·태평양 연구부, 미주연구부, 유럽· <u>아 프리카</u> 연구부 및 경제· <u>통상연 구부</u> 를 둔다.	제2조(명칭 및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, 유럽· <u>러시 아</u> 연구부, 경제·통상· <u>개발연 구부</u> 및 <u>아프리카·중동연구부</u> 를 둔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소관업무) ① (생 략)	제3조(소관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본호 신설></u>	5. <u>지역안보·국제안보에 관한 조사·연구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동북아·동남아·서남아· <u>중동</u> 및 대양주지역 국가의 대 내정세 및 대외정책과 아시아·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 · 연구	1. 동북아·동남아·서남아· 대양주지역 ----- ----- ----- --
2. 우리나라와 동북아·동남아 · 서남아· <u>중동</u> · 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 력체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·연구	2. -----와 동북아·동남 아·서남아·대양주지역 국가 및 ----- -----

3. 기타 동북아 · 동남아 · 서남아 · 중동 · 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 · 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사항

③ ~ ④ (생략)

1. 유럽 ·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 · 연구

2. 우리나라와 유럽 ·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· 연구

3. 기타 유럽 · 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사항

⑤ ~ ⑥ (생략)

1.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 · 통상, 금융문제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 문제에 관한 조사 · 연구

2. 다자간 국제통상 · 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와 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 · 연구

3. 기타 국제경제 · 통상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사항

3. --- 동북아 · 동남아 · 서남아 · 대양주지역 -----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1. -----러시아-----

2. -----러시아-----

3. -----러시아----

⑤ ~ ⑥ (현행과 같음)

1. -----

-----경제 · 통상 · 국제

개발협력,-----

2. -----

-----, 국제개발협력 및

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 · 연구

3. -----통상 · 개발----

⑦ 아프리카 · 중동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아프리카 · 중동지역 국가의

<본항 신설>

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
조사·연구

2. 우리나라와 아프리카·중동
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
사·연구

3. 기타 아프리카·중동지역
국가 관련사항